

(붙임 3)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2023.12.2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 (이하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금융기관)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울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제3조(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한도, 특별지원한도 및 일반지원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추천기업
6.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7. 전입기업
8. 소재·부품 생산기업
9.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0. 명절·재해 자금 등
11.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12. 기타 지원기업
13.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제4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 중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울산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대배정가능액”이라 한다)을 배정한다.

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15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30억원)

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울산본부장은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한도의 40% 이상에서 전략지원 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을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제3항,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

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 중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울산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으며, 동 운용규모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 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

지원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 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

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최대배정가능액을 기준으로 비례배정한다.

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7.5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15억원)

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⑦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 지원기업) 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0호(명절·재해

자금 등) 및 제12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3일까지 한국은행 울산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창업기업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6.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7. 전입기업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8.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도 감축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4조(기타 사항)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대상 대출금리에 대해 한국은행 지원에 따른 금리감면폭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2. 4. 26.)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울산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4. 8.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4년 11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5. 4.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5년 7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6.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10. 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1일(금융기관의 2015년 9월 대출취급 실적)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금융기관의 2016년 5월 대출취급 실적)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7년 1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7년 9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7년 11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울산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8. 11.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9년 2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6.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9년 9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8.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9년 11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20년 8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21년 4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21년 9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8. 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21년 11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21년 11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7.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22년 10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23년 6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전략지원부문)제5항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
A1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고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체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별지 제5호 서식>한 경우)
A2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제조업체
A3	혁신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신기술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신제품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 「특허법」 제86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특허증' -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실용신안등록증' - 「디자인보호법」 제89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디자인등록증' - 기술평가인증서(기술신용평가인증서 포함)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대출로, 대출원장 등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을 명기하거나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별지 제6호 서식>한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을 완료 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에 최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제출한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인증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A4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고 동 요령 제10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조에 의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고 동 요령 제10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녹색기술 적합성 인증' 및 '녹색사업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9조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을 취득하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
 3) ()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KSIC, 제10차)
 4) 이차전지 관련 업종 범위는 축전지제조업(산업분류코드:28202)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광물,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관련 부품·장비 및 기술 등을 모두 포함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
A6	추천기업	- 「울산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에서 ‘울산지역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 지역주력산업(그린모빌리티, 스마트조선, 미래화학신소재, 저탄소 에너지)중 <별첨>의 업종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발급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추천서’를 제출한 기업 -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발급하는 ‘이차전지 관련 업종 ⁴⁾ 확인서’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A9	전입기업	- 울산광역시로 전입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를 지원 1. 타 지역에서 울산광역시로 전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로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별지 제7호 서식>한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국내 복귀기업’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의 시설자금을 지원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으로 동법 제1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제출한 기업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 동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전문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선정서를 제출한 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 ³⁾	- 농업(01), 임업(02) 및 어업(03)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A14	명절 및 재해 자금 등	- 명절, 재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은행 울산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A15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울산광역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기타지원기업	-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 노사분규, 부도급중 등으로 특별히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 울산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업
A16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²⁾³⁾ 1) 합성수지선 건조업(31112) 2) 해운업(501~502) 3) 유흥·숙박업(55~56) 4) 도소매업(45~47) 5) 여행업(752) 6) 운수업(49, 51~52) 7) 여가업(90~91)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
3) ()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KSIC, 제10차)
4) 이차전지 관련 업종 범위는 축전지제조업(산업분류코드:28202)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광물,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관련 부품·장비 및 기술 등을 모두 포함

<별첨>

지역주력산업 및 산업분류코드

전략산업	분류코드 ¹⁾	세부업종
그린모빌리티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스마트조선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미래화학신소재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저탄소에너지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KSIC, 제10차)

<별표2>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안마업	96122 마사지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71101 변호사업
	71102 변리사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202 세무사업
보건업	861 병원
	862 의원

<별표3>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¹⁾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²⁾
최종부도업체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 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
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별지 제6호 서식>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귀하

아래 대출은 기술평가인증서를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

- 업체명 :
- 대 표 :
- 사업자번호 :
- 계좌번호 :
- 대출잔액 :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